
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
(농축산위생품질팀)

1. 개정이유

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, 휴게·일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,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(표시 위치) 명확화(안 별표 3제2호가목)

1)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

창 위치를 “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에” 표시하도록 규정

* 배달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에 게시된 ①다수의 메뉴 또는 가격표시마다 별도의 창 위치를 반복 표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및 ②별도 창의 위치에 대한 가독성 문제 발생

2)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는 “첫 화

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·위·아래에” 표시하도록 개정

나.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등(안 별표 4제1호 다목 및 바목)

1)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및 추가 신설

* (現) 설령탕(육수: 국내산 한우) → (改) 설령탕(우사골: 국내산 한우)

(新) 오코노미야끼(가쓰오부시(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))

다. 영업소 내의 전자매체를 통한 원산지표시 기준 마련(안 별표 4제2호가목)

1) 휴게·일반 음식점 내부의 메뉴판을 전자매체(태블릿 PC 등)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(위치, 크기 등) 마련

* (現)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 → (改) 음식명 옆·위·아래에 표시하거나, 별도의 창으로 표시

라. 「원산지표시법 시행령」 개정('22.12.30.)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(안 별표 4제3호마목)

* (現) 15개 품목(넙치 참돔 등) → (改) 20개 품목(가리비, 우렁쉥이, 전복, 방어 및 부세 추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가목1)가) 중 “표시를”를 “첫 화면(첫 화면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처음 확인되는 화면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이나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다목 기호(-) 중 “육수:”를 “우사골: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의 [예시]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예시 1] 부대찌개(햄(돼지고기: 국내산)), 샌드위치(햄(돼지고기: 독일산))

[예시 2] 오코노미야끼(가쓰오부시(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))

별표 4 제2호가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 전자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 별표 3제2호가목1)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.

별표 4 제3호마목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및 주꾸미”를 “, 주꾸미, 가리비, 우렁챙이, 전복, 방어 및 부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3]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1. (생략) 2.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 가. 전자매체 이용 1)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(인터넷, PC통신, 케이블TV, IPTV, TV 등) 가) 표시 위치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,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·위·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. 나) ~ 라) (생략) 2) (생략) 나. (생략) 3. (생략) [별표 4]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	[별표 3]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----- 1) ----- ----- ----- 가)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첫 <u>화면(첫 화면이란 소비자가</u> <u>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</u> <u>로 처음 확인되는 화면을 말</u> <u>한다. 이하 같다.)이나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. 나) ~ 라) (생략) 2) (생략) 나. (생략) 3. (생략) [별표 4]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

1. 공통적 표시방법

가. · 나. (생 략)

다.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.

[예시 1] 국내산(국산)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

- 쇠고기

불고기(쇠고기: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), 설렁탕(육수: 국내산 한우, 쇠고기: 호주산),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(接着)한 경우: 소갈비(갈비뼈: 국내산 한우, 쇠고기: 호주산) 또는 소갈비(쇠고기: 호주산)

- (생 략)

- (생 략)

- (생 략)

- (생 략)

라. ~ 마. (생 략)

바.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, 다음 1) 및 2)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
[예시] 부대찌개(햄(돼지고기: 국내산)), 샌드위치(햄(돼지고기: 독일산))

<신 설>

1. --- ---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
-----.

[예시 1] -----

----- (우사골: ---

- (현행과 같음)

- (현행과 같음)

- (현행과 같음)

- (현행과 같음)

라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-----

-----.

[예시 1] -----

[예시 2] 오코노미야끼(가쓰오부시

1). ~ 3). (생략) 사. ~ 자. (생략) 2.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가.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). ~ 3). (생략) <신설> 나. ~ 다. (생략) 3.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가. ~ 라. (생략) 마.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다랑어,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방법: 원산지는 국내산(국산),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하고,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. 1). ~ 3). (생략) 바. (생략)	(가다랑어: 인도네시아산)) 1). ~ 3). (현행과 같음) 사. ~ 자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가. ----- ----- 1). ~ 3). (현행과 같음) 4). 전자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 별표 3제2호가목1)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. 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----- -----, 주꾸미, 가리비, 우렁챙이, 전복, 방어 및 부세----- ----- ----- 1). ~ 3). (현행과 같음) 바.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	
연락처	(044) 201 - 2276